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박정근 소유물건(2026타경100545)

의 뢰 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세경

감정서번호 :　HW2603-10-01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원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2-702-3755**　　FAX. **02-702-3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5길 10 광원빌딩 203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황 태 현 (인)

감정평가액	**일십일억이천만원정(₩1,120,000,000.-)**			
의 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세경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9계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박정근 (2026타경100545)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3.27	2026.03.26 ~2026.03.27	2026.03.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중 9분의 4 이	아파트	1세대 중 9분의 4 하	- 백	1,120,000,000 여
	합 계					₩1,12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제105동 제14층 제1404호'중 박정근 소유지분(갑구1, 6번, 9분의 4)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9계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3월 27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6년 3월 26일 ~ 2026년 3월 27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기타 참고사항

① 금번 평가는 박정근 소유지분(4/9)에 대한 평가로서, 소유지분별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해당 지분면적에 적용하여 감정평가액 결정하였음.

② 본건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구분등기되어 있고 구조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건물임.

③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표기 등에 의거 확인하였음.

④ 본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내부 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외부관찰 및 일반적·표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유의바람.

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귀 법원 요청에 따라 "한국부동산연구원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연구"를 참작하여 대상 구분건물의 토지와 건물 배분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배분비율(가액)은 가치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V. 근거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④ 생략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	①, ② 생략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⑤, ⑥ 생략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③,④ 생략
제6조 (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③,④ 생략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생략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생략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Ⅰ.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의 개요

소재지·건물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9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제105동 제14층 제1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91



주용도 및 규모		아파트 14개동 부속건물 포함 977개호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12.12.24
건물규모	층수	단지 전체 : 지하4층, 지상20층 105동 : 지상17층
	연면적	167,101.564 ㎡
비고		105동 64개호, 10,339.983㎡

※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2. 각 호별 상세 및 평가대상

일련번호	동/층/호수	용도	건물면적(㎡)			대지권(㎡)	비고(전용률(%))
			전유	공용	합계		
(1)	105/14/1404	아파트	119.727	117.449	237.176	67.07	50.48
	갑구1번, 갑구6번 박정근 소유지분 9분의 4		53.212	52.200	105.412	29.809	-

※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3. 근거 법령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	①, ② 생략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⑤, ⑥ 생략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감정평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가치형성요인비교치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번호	소재지	동/층/호	용도	전유면적(㎡)	거래가액(원) (원/전유㎡)	거래시점 (사용승인)	비고
#1	흑석동 339	105/3/000	아파트	119.727	2,100,000,000 (@17,539,000)	2025.06.23 (2012.12.24)	-
#2	흑석동 339	105/14/000	아파트	119.727	2,200,000,000 (@18,375,000)	2025.10.18 (2012.12.24)	-
#3	흑석동 339	110/14/000	아파트	119.738	2,220,000,000 (@18,540,000)	2025.08.26 (2012.12.24)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동일 단지내의 거래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사례 #2 > : 일련번호 (1)

(3) 사정보정

의 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4) 시점수정

■ **비교 거래사례#2**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아래 표 참조)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table>
<tr><th>시군구</th><th>상승률
(시점수정치)</th><th colspan="4">산출근거</th></tr>
<tr><td rowspan="4">서울
강남지역
서남권
동작구
아파트</td><td rowspan="4">7.931%
(1.07931)</td><td colspan="2">거래시점 /
기준시점</td><td colspan="2">2025.10.18/
2026.03.27</td></tr>
<tr><td rowspan="2">매매가격
지수</td><td>사례거래 당시
지수</td><td>2025.09</td><td>93.3</td></tr>
<tr><td>기준시점 당시
지수</td><td>2026.02</td><td>100.7</td></tr>
<tr><td colspan="2">산식</td><td colspan="2">1 + (100.7 - 93.3) / 93.3
≒ 1.07931</td></tr>
<tr><td colspan="6">※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해당월 지수가 미발표시 가장 최근 발표된 지수를 연장 적용함.</td></tr>
</tabl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일련번호 (1) / 비교사례 #2]

조 건	세부항목(주거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동일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동일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6	향, 일조, 조망 등에서 본건이 우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본건과 사례가 동일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누계)		1.060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① 산정단가 결정

본 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단가) 산정					
일련번호	동/층/호수	적용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요인	산정단가 (원/전유㎡)
		일련번호	단가 (원/전유㎡)				
(1)	105/14/1404	#2	18,375,000	1.000	1.07931	1.060	21,022,000

② 시산가액 결정

본 건				산정단가 (원/전유㎡)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일련 번호	동/층/호수	전유면적(㎡)				
		공부	사정			
(1)	105/14/1404	119.727 x 4/9	53.212	21,022,000	1,118,622,663	1,120,000,000

IV. 참고가격자료

1.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거래수준(원/전유㎡)	기타
아파트	아파트단지	중로변	20,000,000 - 22,000,000	2종일주
본건 지역의 거래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2.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호	용도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원/전유㎡)	기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1)	흑석동 339 105/7/000	아파트	119.727	1,760,000,000 (@14,699,000)	2024.04.26 (2012.12.24)	법원경매
(2)	흑석동 339 110/17/000	아파트	119.727	1,860,000,000 (@15,534,000)	2024.09.12 (2012.12.24)	법원경매
(3)	흑석동 336 101/7/000	아파트	115.98	2,630,000,000 (@22,676,000)	2026.02.03 (2012.08.02)	법원경매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경매동향

용도별	서울 동작구 2025년 03월 ~ 2026년 02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집합건물	85,791,410,000	80,265,670,333	93.6	685	195	28.5
아파트	24,382,000,000	26,331,143,811	108.0	44	24	54.5

(출처 : 인포케어)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평가대상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유면적		대지권			
		공부	사정	공부	사정		
(1)	제105동 제14층 제1404호	119.727 x 4/9	53.212	67.07 x 4/9	29.809	1,120,000,000	박정근 소유 지분(4/9)
결정의견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 참고가격자료를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공부	면적 (㎡) 사정	감정평가액 (원)	비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91	339 흑석한강 센트레빌 2차 제105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7층 1층 2층 3층 ~ 15층 각 16층 ~ 17층 각	 522.072 509.424 641.941 481.627			
1 (1)	상동	339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4층 제1404호 1. 소유권 -------- 대지권	48,191.5 4 119.727 x -- 9 67.07 4 ----- x -- 48,191.5 9	 53.212 29.809	 1,120,000,000	 비준가액 (공부상 공용부분 포함) 갑구1, 6번 박정근 소유지분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784,000,000**	
						건 물 :	**336,000,000**	
	합 계						**₩1,120,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 원거리에 지하철9호선 흑석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 중 제14층 제14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12.24)
외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하는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전기 및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왕복4차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주택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9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제105동 제14층 제14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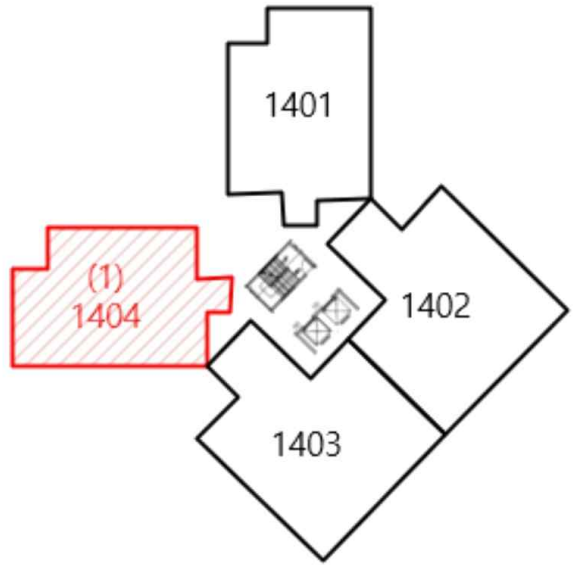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9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제105동 제14층 제1404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9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제105동 제14층 제1404호



<14층 호별배치도>



<1404호 내부구조도>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표시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유의바람.

사 진 용 지



1404호 현관



1층 주 출입구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단지 전경 및 주위 환경